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약관(본부 ↔ 고객)

제1조 (약관의 적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카드 소유주)이 인천광역시 관할 수도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할 수도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 카드정보를 금융결제원, 자동납부 신청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수용가 소재지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청구한 금액과 지정한 납기일에 자동승인을 계속거래 하는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자동승인일)

신용카드 자동 승인일은 해당 납기월 23일(토, 일, 공휴일은 다음날)입니다.

제3조 (자동승인 처리)

신용카드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청구서, 안심클릭 혹은 안전결제(ISP)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자동승인 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4조(최초 청구일)

카드 자동납부 신규 신청에 의한 청구 개시일은 접수일로부터 익월 23일입니다.

제5조 (체납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자동승인 한도가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카드 승인이 실패한 경우, 별도 배부된 체납고지서로 납부하는데 이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연체금)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6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카드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청구는 해당 납기일 개별 카드사 정책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본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본부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정보제공)

신용카드 자동납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결제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카드사에 제공됩니다.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카드번호 변경 시 변경된 카드번호로 자동납부 서비스가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본부의 자동납부 임의 해지)

신용카드 자동승인이 연속해서 2회이상 안 되는 경우에는 자동납부가 해지 됩니다.

제9조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에 관한 금융결제원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2차(신청시, 익월초)에 걸쳐 진행됩니다. 카드 유효성 검증 시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단, 유효성 검증 실패시 청구자료 미전송으로 카드 승인이 불가하여 OCR 고지서 및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제10조 (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본 약관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